제20대 국회개원

NABO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7 조세지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❼ 조세지출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7 조세지출


총괄 |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정문종 조세분석심의관
김경신 세제분석과장

집필 | 채은동 경제분석관
최천규 경제분석관
김효경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하영 행정실무원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assembly.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개원

NABO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7 조세지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5.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발 간 사

조세는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복지·경제 정책수요의 증가는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 확장을 가속하여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개혁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세개편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조세개편 방향과 쟁점을 파악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와 현안 위주로 정리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최근의 현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개정판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면서, 부의 집중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속·증여세편'을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지금은 복지·경제 정책 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제관련 입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조세체계 이해를 돕고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 Contents


## Ⅰ. 개 요

1. 조세지출제도 의의 ····· 3

2. 조세지출제도 연혁 ····· 6

가. 전체 연혁 ····· 6
나. 조세지출 제도개선 연혁 ····· 7
다.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 10

3. 조세지출 운용현황 ····· 12

가. 전체 현황 ····· 12
나. 예산분류기준별 현황 ····· 14
다. 세목별 현황 ····· 17
라. 주요 항목별 현황 ····· 18
마. 일몰연도별 현황 ····· 20

## 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운용현황

1. 개 관 ····· 25

2. 소득세 ····· 29

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29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 30
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34
라. 근로장려세제 ····· 35

Contents


마. 자녀세액공제(舊 자녀양육비공제 등) ····· 37
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40
사. 연금계좌세액공제(舊 연금저축 소득공제) ····· 41
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43
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45
차.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46
카. 자녀장려세제 ····· 49
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50
파.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조세특례 ····· 51
하. 비과세종합저축(舊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 53
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54

3. 법인세 ····· 55
가. R&D비용 세액공제 ····· 55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57
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 58
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舊임시투자세액공제) ····· 60

4. 부가가치세 등 ····· 61
가.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61
나.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 ····· 63
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64
라. 신용카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65
마.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67
바.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69

## Ⅲ. 최근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최근 동향 ····· 73

2. 주요 논의 사항 ····· 74
가. 조세지출 범위 ····· 74
나. 전체 조세지출항목으로 일몰도입 확대 ····· 74
다. 환급형 세액공제 회계처리문제 ····· 76
라. 지방세감면 통제·관리 필요 ····· 77

## Ⅳ. 부록: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1. 2016년 일몰도래 항목 ····· 83

2. 2017년 일몰도래 항목 ····· 84

3. 2018년 일몰도래 항목 ····· 86

4. 2019년 일몰도래 항목 ····· 89

5. 일몰조항 없는 항목 ····· 90

# 표 목차

[표 1] 조세지출(비과세·감면)제도의 특성 ····· 4
[표 2] 주요국의 조세지출 비중 비교 ····· 6
[표 3]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 9
[표 4] 2016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 10
[표 5] 국가별 조세지출 평가기준 ····· 11
[표 6]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추이: 2009~2016년 ····· 14
[표 7]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2016년 ····· 15
[표 8]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 16
[표 9] 조세지출 상위 25개 주요항목 현황 ····· 19
[표 10]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 21
[표 11] 세목별 조세지출 주요항목 ····· 25
[표 12] 조세지출 상위 25개 주요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 ····· 27
[표 13] 조세지출 정비내역 추이(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06~2015년 ····· 73
[표 1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회계처리 비교: 2015년 ····· 77
[표 15]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1980~2016년 ····· 78

# 그림 목차

[그림 1] 국세감면액 및 지방세감면액 추이: 1998~2016년 ····· 12
[그림 2] 국세감면율(NABO 추계): 2008~2014년 ····· 13
[그림 3]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08~2016년 ····· 17

# Ⅰ. 개요

1. 조세지출제도 의의 ····· 3
2. 조세지출제도 연혁 ····· 6
3. 조세지출 운용현황 ····· 12

# Ⅰ. 개 요

## 1. 조세지출제도 의의

■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5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지원 여부 등 특정성 및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 감면 중 일부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키도록 함
- 그러나 특정성 및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 조세지출 지정요건이 행정부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고, 하위법령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조세법체계로부터 어떤 항목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조세지출 기준이 모호함
- 참고로, 현재 국세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지방세통계연감(舊 지방세정연감)」를 통해서 각각 집계하고 있음[2]

■ **외국의 경우, 1967년 미국 재무부 차관보 Stanley S. Surrey가 세금제도 중에서도 재정지출 성격을 띠는 조세특례제도를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최초로 정의**

- 미국 재무부에서 1967년부터 조세지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부터는 의회법에 따라 조세지출을 연간 예산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 목록과 조세감면액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미국에서 조세지출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1)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 첨부자료로서 동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의안명에 '예산안'으로 검색하여 접속하면 PDF 형식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경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유사한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1990년 중반에는 최소 16개국에서 조세지출보고서제도를 도입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일본 등

■ **독일은 조세지출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국보다 10여년 앞선 1954년부터 조세특례를 보조금제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리하였음**

- 독일은 1967년부터 재정지출 보조금과 함께 조세지출 현황을 정리한 보조금보고서(Subventionsbericht)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3)]

■ **OECD는 1995년 조세지출(비과세 · 감면) 제도의 개념을 "조세체계상의 일반표준(norm)인 기준조세체계*를 벗어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고, 1996년 조세지출의 특성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으로 정리**

*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표 1] 조세지출(비과세 · 감면)제도의 특성

| | 내 용 |
|---|---|
| 특정성 |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
| 대체 가능성 |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 |
| 폐지 가능성 |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함 |
| 기타 | 조세지출은 규모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기준조세제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하며, 조세지출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수 있는 항목이 동일 조세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자료: OECD,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1996

■ **그러나,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이 명확하더라도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4)]**

3) Harry A. Shannon, The Tax Expenditure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 Comparison, 33 Tax Notes 201, 1986

- 미국은 조세지출의 관리범위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증여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도 감면제도가 있으나 조세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음(조세지출보고서는 예산분석서 19장에 수록)
- 캐나다는 조세지출을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조세특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개인·법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도 포함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1980년부터 매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예산안의 부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특정 행위나 특정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조세지출로 정의
- 영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영세율·우대세율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은 연구·개발비 세액감면·공제(R&D Credit)가 유일
- 연방제국가로 지방세 비중(2010년 전체의 48.1%)이 높은 독일의 경우, 주로 민간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R&D 관련 조세지출 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운용하여 국세 기준상의 조세지출에는 미포함
- 프랑스는 표준조세를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특례를 조세지출로 정의하며, 특정 조세감면이 30년 이상 존속되면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
- 스웨덴에서는 조세수입이 사전에 정의된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도출된 금액(미실현 조세수입)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조세지출로 간주하므로, 조세지출의 범위를 '비과세·감면'으로 가장 넓게 보고 있음

■ **OECD에서는 2010년 각 국가가 집계하는 조세지출 항목을 제출받아 동일기준하에 조세지출 규모를 재산출한 바 있음**

- 다만, 국가마다 조세체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방식, 조세감면액 추정기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출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여, 국가별 조세지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특히 OECD 기준에 해당되는 조세지출 항목을 집계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과소추계 가능성이 있음[5]

4)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재정포럼 제13권 제8호 통권 제146호, 2008.8. pp.6-18 참고하여 재작성

5) 미국은 주식 양도차익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조세지출로 집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제도(중소기업 주식 우대세율 적용)에 대해 조세지출의 범위에

[표 2] 주요국의 조세지출 비중 비교

(단위: %)

| | 캐나다 2004 | 독일 2006 | 한국 2006 | 네덜란드 2006 | 스페인 2008 | 영국 2006 | 미국 2008 |
|---|---|---|---|---|---|---|---|
| 총조세 대비 | 59.36 | 8.81 | 24.73 | 9.95 | 28.16 | 38.84 | 58.59 |
| GDP 대비 | 6.94 | 0.74 | 2.48 | 2.00 | 4.55 | 12.79 | 5.97 |

자료: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 2. 조세지출제도 연혁[6)]

### 가. 전체 연혁

■ **우리나라 조세지출제도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수단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역기능을 수정·보완하는 제도들이 최근에 도입**

-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전략적으로 선정된 특정 산업으로의 투자 유인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조세지출제도의 과도한 남발로 인한 세수 확보의 불안정성 및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
- (1980년대)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능별 지원제도로 전환
- (1990년대)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가 금지됨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별 조세지원이 강화
  - 한편,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세계 최초로 도입
- (2000년대) 연구개발 및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전체적인 조세감면액 규모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제도가 도입
  -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형태로 조세지출의 감면액 통계가 국회에 보

포함시키지 않음. 영국은 식료품의 영세율 적용이 전체 조세감면액의 16.0%를 차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또한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조세지출에 미포함

6)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편 제3권: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2012.12 참고하여 재작성

고되기 시작

- (2010년대) 2010년에는 기존 조세지출보고서가 조세지출예산서로 개편되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부터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 201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의 경우 그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 예고[7)]
  - 201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정부안 모두 사전평가를 시행하며, 평가주체는 의원발의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시행예정), 정부안은 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각각 수행

## 나. 조세지출 제도개선 연혁

■ **조세지출의 감면규모나 수혜대상이 명백히 노출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통상 조세지원의 경우 일몰규정이 있으나, 일몰연장이 관례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나 필요성보다는 조세혜택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조세저항이 제도개정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 국세감면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세입기반을 잠식할 우려
- 특정계층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출예산사업과 중복 지원된 조세특례 항목도 존재
- 실효성 없이 생성·보존되는 조세지원제도들이 여전히 많음
  - 실적이 없거나 추정곤란인 조세지출항목수: 2012년 45개→2014년 44개
- 조세지출제도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조세회피(loophole) 발생 가능
  - 세법지식·세무정보가 부족한 중소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

■ **이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운용상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왔음**

■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여 조세지원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운영을 시도하였음**

7) 기획재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3.3.26.

- 모든 조세지원은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세특례를 제한
- 조세지원의 항구화 현상으로 조세지원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

■ **1976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5년 단위의 한시법 체제로 전환**

-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법 자체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여 조세지원이 항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그 한시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계속하여 연장·운영

■ **1998년 10월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고 각 특례의 적용시한(일몰시한)을 해당조문에 명기하였고,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됨**

- 조세지출 항목 및 감면액 규모(2년치), 감면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세지출보고서가 1999년 처음으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

■ **2010년 도입된 조세지출예산제도[8]는 국가재정법[9]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도입**

- 국민의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 선정되어, 국세감면 사전제한제·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 작성제도 등이 시행되고 기존 조세지출보고서가 조세지출예산서로 개편
  - 조세지출보고서: 전년실적, 금년잠정 등 2개 연도 감면액 집계
  - 조세지출예산서: 전년실적, 금년추정, 내년추정 등 3개 연도 감면액 집계
- 다만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세법관련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재정정보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

■ **2013년에는 조세지출성과관리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미흡판정을 받은 44개 중 17개 항목이 최종 폐지**

8) 조세지출로 인해 세입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으로 부름

9)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0년 회계연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음

- 조세지출성과관리제도는 1차 중앙부처 자체평가, 2차 외부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평가를 통해, 세법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
  - 2013년 외부전문기관 평가: 전체 188개 중 아주미흡 10개, 미흡 34개
- 2013년 세법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행정부가 제도 폐지를 제안한 19개 중 17개 항목이 국회심사 결과 최종 폐지

■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제도가 시행**

- 이전에는 조세지출에 대한 재정소요액을 집계하는 수준에서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2015년부터는 기존 제도와 도입추진 제도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제도의 경제적·정책적 효과까지 심층적으로 분석
  - 2015년: 심층평가 14건, 예비타당성조사 3건

■ **2015년 심층평가 결과, 평가대상 14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일몰연장, 4건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 2건에 대해서는 폐지가 권고됨**

- 심층평가에서 일몰연장(8건) 및 폐지(2건)를 권고한 건은 세법개정(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으며, 축소 또는 폐지를 권고한 4건 중 3건은 축소연장, 1건은 단순 연장됨

[표 3]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 심층평가 결론 | 세법개정안 반영사항 | 조세지출 항목 |
|---|---|---|
| 폐지 (2건) | 폐지 (2건)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b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일몰연장 (8건) | 일몰연장 (8건)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br>-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br>-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br>-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br>-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br>-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br>-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확대연장)<br>-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확대연장) |
| 축소·폐지 (4건) | 축소·연장 (3건) | - 농·수협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br>-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br>-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일몰연장 (1건) |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2015.10, 7~8쪽

■ 2016년 4월 현재, 심층평가 6건, 예비타당성조사 2건이 시행중

[표 4] 2016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 구분 | 조세지출 항목 |
|---|---|
| 예비타당성조사 (2건) | -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산업부 건의)<br>-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산업부 건의) |
| 심층평가 (6건)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br>-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br>-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br>-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br>-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br>-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6.3.29., 12쪽

## 다.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 국가별로 조세지출제도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평가 제도가 상이함

- 국가마다 신규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수효과, 경제성, 사회적 영향 등 관리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운용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음

■ 조세지출제도 사전평가와 관련하여 미국·영국·독일 등은 도입예정인 법률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미국(비용추계), 영국(조세영향분석서), 독일(입법평가제도) 등이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기 운용되는 조세지출의 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지출 관련 항목명과 감면액 규모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음

-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세특례(102개)와 보조금(62개)의 재정소요 규모를 함께 집계(독일 재무부, "보조금보고서")
- 미국은 일몰연도별로도 조세지출항목 집계하여 발표

■ **운용되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우, 미국·영국은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독일은 주요항목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평가·관리를 해 오고 있음**

- 미국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연간 5~10개의 조세지출에 대해서만 정부책임처(GAO)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
- 독일은 감면액 규모가 큰 20개 주요항목 중심으로 조세지출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수행(2013년 기준, 전체 102개 중 27개 평가)

■ **조세지출 평가기준은 국가별 또는 조세지출 특징별로 차이가 있으나 세수효과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행정부는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OECD의 경우 조세지출의 분야와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하였음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국가의 특성에 따라 조세지출 평가기준이 상이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세수효과, 경제적 효과성(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선정

[표 5] **국가별 조세지출 평가기준**

| | 내 용 |
|---|---|
| 한국 | 경제성(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br>정책성(정책 일관성, 운용상 위험요인 등)<br>형평성(소득계층간, 대·중소기업간, 지역간 등) |
| OECD | 조세지출의 분야와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하였음<br>- 근로증대 분야: 노동공급, 소득분배, 세수효과, 재정지출과의 비교 등<br>- 주택 분야: 조세지원 근거, 효율성, 소득분배, 세수효과 등 |
| 미국 | 효과성(목표달성도), 납세자 순응비용,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왜곡 등 |
| 영국 | 비용-혜택·효과성·집행비용·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br>가부(可否)이기는 하나 중소기업 영향·탄소분석·양성평등·인종평등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 |
| 독일 | 감면액 규모, 투명성, 이론적 근거, 보조금 관련 제도와의 연관성, 효과성, 효율성 등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2015.10

# 3. 조세지출 운용현황

## 가. 전체 현황

■ **국세 비과세·감면을 지칭하는 조세지출제도의 전체 감면액(=국세감면액)은 2015년 35.7조원(추정치), 2016년 35.3조원(추정치)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8년 7.7조원 규모이던 조세지출액은 2007년 2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대규모 조세감면을 실시함에 감면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9년 이후 약 30조원 규모를 보이던 국세감면액은 기존에 미포함된 4개 항목이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2년부터 33조원 초과
- 지방세감면액 또한 1997년 2.0조원에서 2014년 13.0조원으로 증가

[그림 1] **국세감면액 및 지방세감면액 추이: 1998~2016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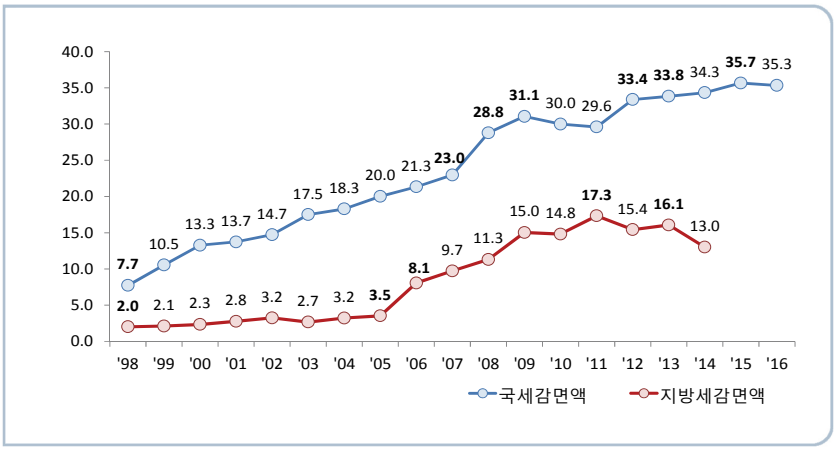


주: 국세감면액의 경우, 2012년 이후 기존에는 집계되지 않던 조세지출 4개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5~2016년은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국세감면액), 행정자치부(지방세감면액)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세감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100

- 국세감면율은 2008년 15.3%에서 2009년 16.7%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14% 내외 수준을 보였음
- 전체 국세감면액을 통제하기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해 법정한도에 비해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낮았음[10)]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그림 2] **국세감면율(NABO 추계): 2008~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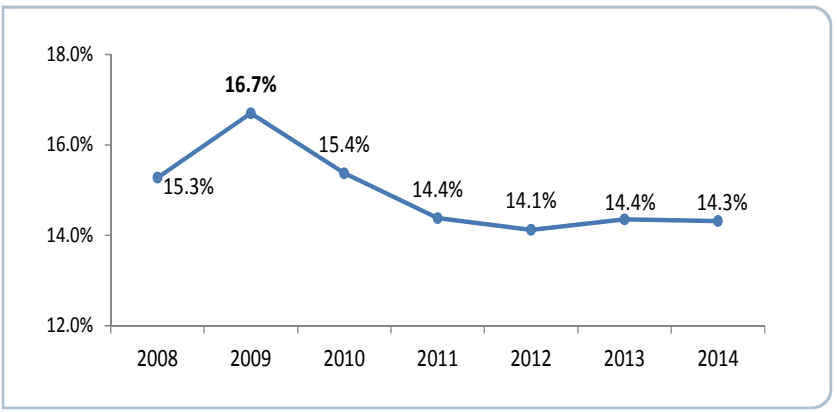


주: 행정부는 기존에 조세지출항목에 포함되지 않던 4개 항목(4조원 규모)을 조세지출에 포함시키면서 동 항목들의 2008~2011년 조세지출액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에 NABO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동 항목들의 과거 조세지출액을 추정하여 전체 감면액 계산. 이로 인해 행정부와 NABO 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국세통계연보 자료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 다만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한 이후 연도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기존 일몰미포함 항목 포함시, 2011~2012년 15.9~16.2%) 이를 준수하기가 쉬워져, 법정한도제도가 국세감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로 기능하기 어려운 면 내포(국회예산정책처, 2012)

## 나. 예산분류기준별 현황

■ **국세감면액 규모를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액과 재정지출액 합계와 비교하면, 전체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은 2009년 9.9%에서 2016년 8.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음**

- 조세지출과 총지출을 더한 광의의 재정지출의 경우 2016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으로 정부는 조세지출 35.3조원, 총지출 386.7조원 등 422.0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합계 지출액에서 조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조세지출액이 2008~2009년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35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가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
- 연평균증가율을 통해 조세지출액과 재정지출액을 비교하면, 2009~2016년 동안 조세지출액이 연평균 1.9%씩 증가한데 반해 재정지출액은 연평균 3.6%씩 증가해 최근 들어 조세지출액 증가정도가 상대적으로 둔화

[표 6]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추이: 2009~2016년**

(단위: 조원)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 조세지출액[1] (A) | 31.1 | 30.0 | 29.6 | 33.4 | 33.8 | 34.3 | 35.7 | 35.3 | 1.9% |
| 재정지출액[2] (B) | 301.8 | 292.8 | 309.1 | 325.4 | 349.0 | 355.8 | 384.7 | 386.7 | 3.6% |
| 합 계 (C = B+C) | 334.8 | 325.1 | 341.4 | 358.8 | 382.8 | 390.1 | 420.4 | 422.0 | 3.4% |
|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 9.9% | 9.9% | 9.5% | 9.3% | 8.8% | 8.8% | 8.5% | 8.4% | |

주: 1) 2008~2011년 조세지출액(국세감면액)은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발표된 수치에 201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세지출 4개 항목의 조세지출액(NABO 추계치)을 반영하여 계산

2) 재정지출은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며, 2013년과 2015년은 추경예산 기준이고 2016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임

3) 연평균증가율은 2009~2016년 기준으로 계산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예산분야별로 조세지출액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조세지출액·재정지출액 합계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37.9%), 보건(28.0%), 농림수산(20.0%), 국토 및 지역개발(12.8%), 환경(8.5%) 순으로 높았으며, 이 외 분야의 동 비중은 평균인 8.4%보다 낮았음
- 예산분야별로 사회복지(10.6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9.8조원), 농림수산(4.8조원), 보건(4.1조원) 등 4개 분야의 조세지출액 합계는 전체의 83.1%인 29.4조원 규모로, 조세특례가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표 7]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2016년**

(단위: 조원, %)

| | 조세지출액 | | 재정지출액 | | 합계 | | 합계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
|---|---|---|---|---|---|---|---|
| | (A) | 전체 대비 | (B) | 전체 대비 | (C=A+B) | 전체 대비 | |
| 일반공공행정 | 2.4 | 6.8% | 60.9 | 15.7% | 63.3 | 15.0% | 3.8%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17.5 | 4.5% | 17.5 | 4.1% | — |
| 외교·통일 | 0.0 | 0.0% | 4.7 | 1.2% | 4.7 | 1.1% | 0.0% |
| 국방 | 0.6 | 1.6% | 38.0 | 9.8% | 38.6 | 9.1% | 1.4% |
| 교육 | 1.2 | 3.5% | 53.2 | 13.7% | 54.4 | 12.9% | 2.2% |
| 문화 및 관광 | 0.0 | 0.1% | 6.6 | 1.7% | 6.6 | 1.6% | 0.3% |
| 환경 | 0.6 | 1.8% | 6.8 | 1.8% | 7.5 | 1.8% | 8.5% |
| 사회복지 (①) | 10.6 | 30.0% | 112.4 | 29.1% | 123.0 | 29.1% | 8.6% |
| 보건 (②) | 4.1 | 11.6% | 10.5 | 2.7% | 14.6 | 3.5% | 28.0% |
| 농림수산 (③) | 4.8 | 13.7% | 19.3 | 5.0% | 24.1 | 5.7% | 20.0% |
| 산업·중소 및 에너지 (④) | 9.8 | 27.8% | 16.1 | 4.2% | 25.9 | 6.1% | 37.9% |
| 교통 및 물류, 통신 | 0.6 | 1.6% | 19.4 | 5.0% | 20.0 | 4.7% | 2.9% |
| 국토 및 지역개발 | 0.6 | 1.6% | 3.9 | 1.0% | 4.4 | 1.1% | 12.8% |
| 과학기술 | 0.0 | 0.0% | 6.7 | 1.7% | 6.7 | 1.6% | 0.0% |
| 합 계 | 35.3 | 100.0% | 386.7 | 100.0% | 422.0 | 100.0% | 8.4% |
| 주요항목 (①~④) | 29.4 | 83.1% | 158.3 | 40.9% | 187.7 | 44.5% | 15.6% |

주: 재정지출액의 경우, R&D 분야는 '과학기술'로, SOC 분야는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으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조세지출액 규모가 큰 항목들이 사회복지 · 보건 · 농림수산 · 산업 등의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분야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7조원), 근로장려금(1.3조원), 자녀세액공제(1.2조원), 연금계좌세액공제(0.9조원), 자녀장려금(0.8조원) 등의 항목이 포함
- 보건분야는 보험료 특별공제(2.4조원), 의료비 특별공제(0.9조원) 등 소득세 세액공제항목이, 농림수산분야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6조원), 면세유 지원(1.3조원) 등의 항목이 각각 포함
- 산업 · 중소 및 에너지분야에는 R&D 비용세액공제(2.8조원)가 가장 큼

[표 8]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 예산분류 | 세부 항목 |
|---|---|
| 사회복지<br>(10.6조원)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조 7,191억원)<br>근로장려금 지급(1조 3,018억원)<br>자녀세액공제(1조 2,399억원)<br>연금계좌세액공제(9,182억원)<br>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8,312억원)<br>자녀장려금 지급(8,023억원)<br>법인기부금 손금산입(7,237억원)<br>경로우대자 추가공제(4,078억원) 등 |
| 보건<br>(4.1조원) | 보험료 특별공제(2조 4,120억원)<br>의료비 특별공제(8,775억원)<br>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7,748억원) 등 |
| 농림수산<br>(4.8조원) | 농업 · 축산업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5,762억원)<br>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 3,472억원)<br>자경농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080억원)<br>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5,181억원) 등 |
| 산업 · 중소 및 에너지<br>(9.8조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8,499억원)<br>농 · 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1,584억원)<br>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 6,995억원)<br>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 3,013억원)<br>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4,415억원) 등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16년 조세지출액 전망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 세목별 현황

■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소득세는 증가추세인 반면 법인세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의 경우, 2011년 13.8조원에서 2016년 19.4조원으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2008~2010년 7조원 규모를 보이다가 2010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2011년 감면액 규모가 증가하여[11] 9.2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최근 경기침체 및 조세지출 정비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
  -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1년 2.7조원→2016년 0.4조원(추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16년 2.2조원) 등 주요 항목들이 물가상승과 함께 감면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감면액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그림 3]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08~2016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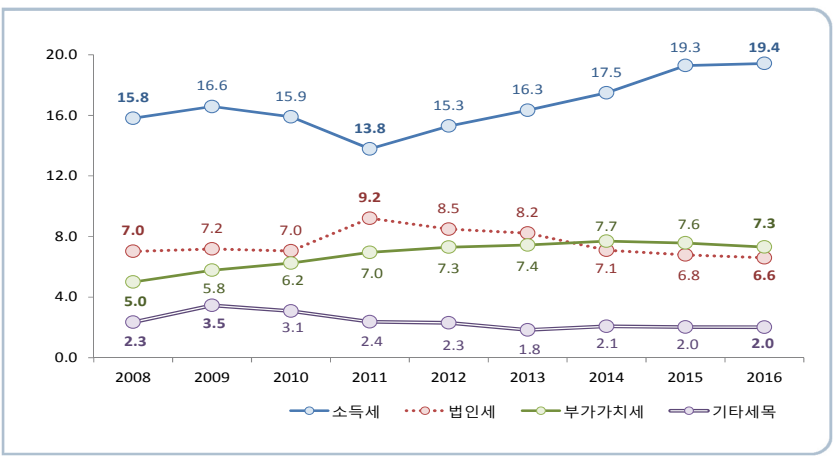


주: 2012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된 4개 항목의 경우, 2008~2011년 자료는 행정부에서 최근 기준(항목 추가 등)을 반영한 조세지출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NABO에서 추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R&D비용세액공제(1.9조원→2.3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1.8조원→2.7조원).

## 라. 주요 항목별 현황

■ **감면액 규모가 큰 조세지출 25개 항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들이 전체 조세감면을 주도**

- 규모가 큰 상위 25개 항목의 2016년도 조세지출액 규모는 29.2조원으로 전체 감면액(35.3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5%로 상당

■ **둘째, 조세지출 주요항목의 절반 이상이 일몰규정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일몰이 있는 11개 항목 또한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

- 14개 항목은 일몰규정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항목의 경우 제도 전체적으로(8개) 또는 일부항목에 제한적으로(3개) 일몰규정이 있음
- 제도 전체 일몰규정이 있는 8개 항목 또한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일몰이 적용되는 R&D 비용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의 경우도 일몰이 지속 연장

■ **셋째, 감면액 규모가 큰 소득세 감면 항목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세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있음**

- 전체 25개 항목 중 소득세 15개, 법인세 4개, 부가가치세등 6개였으며, 이중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항목이 19개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소득세 중에서도 소득공제(3개) 및 세액공제(10개) 항목이 13개를 차지하고, 감면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소득세(16.0조원)의 감면액 규모가 법인세(5.7조원)나 부가가치세 등(7.4조원)에 비해 큼

■ **넷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제도는 조세지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반면, 농민 관련 조세지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2015년부터 자영업자 추가되고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부터 도입되는 등 관련 제도가 가장 빠르게 확대
- 반면에 농·임·어업용 면세유('09년 15,287억원→'16년 13,472억원)와 자경농지등 양도소득세 면제('09년 18,779억원→'16년 8,080억원) 항목은 관련 종사자 감소 및 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전체 규모가 감소

## [표 9] 조세지출 상위 25개 주요항목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 세목 | 규정 | 일몰시한 | 2016년 감면액 |
|---|---|---|---|---|
| 1. R&D비용세액공제 | 소득세(2%), 법인세(98%) | 조특법§ 10 | 일부내역 2018년 | 28,499 |
| 2. 보험료 특별공제 | 근로소득세 | 소득법§ 59의4① | - | 24,120 |
|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부가령§ 84① | - | 21,584 |
| 4.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소득세 | 조특법§ 126의2 | 2016년 | 19,321 |
| 5.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세 | 소득법§ 51의3 | - | 17,191 |
|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45%), 법인(55%) | 조특법§ 7 | 2017년 | 16,995 |
| 7.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 | 조특법§ 105①5 | 2017년 | 15,762 |
| 8.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 교통세(67%), 부가세(20%) 등 | 조특법§ 106의2①1 | 2018년 | 13,472 |
| 9. 근로장려금 | 소득세 | 조특법§ 100의2~26 | - | 13,018 |
| 1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부가법§ 46 | 일부내역 2016년 | 13,013 |
| 11. 자녀세액공제(2015년 신설) | 소득세 | 소득법§ 59의2 | - | 12,399 |
| 12. 교육비 특별공제 | 근로소득세 | 소득법§ 59의4③ | - | 11,089 |
| 1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 | 소득법§ 59의3 | - | 9,182 |
| 14. 의료비 특별공제 | 근로소득세 | 소득법§ 59의4② | - | 8,775 |
| 15.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 소득세 | 소득법§ 59의4④ | - | 8,312 |
| 16. 자경농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 | 조특법§ 69, 조특법§ 69의2 | 일부내역 '17, '18년 | 8,080 |
| 17. 자녀장려금(2015년 신설) | 소득세 | 조특법§ 100의27~31 | - | 8,023 |
| 1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소득세 | 소득법§ 12 3호 너목 | - | 7,748 |
| 19. 기부금(법인)의 손금산입 | 법인세 | 법인법§ 25 | - | 7,237 |
| 20.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 | 조특법§ 108 | 2016년 | 5,248 |
| 21.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 소득세 | 조특법§ 88의5, 89의3 | 2018년 | 5,181 |
| 22.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 | 조특법§ 105①1 | - | 5,078 |
| 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 조특법§ 26 | 2017년 | 4,415 |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 세목 | 규정 | 일몰시한 | 2016년 감면액 |
|---|---|---|---|---|
| 24. 비과세종합저축 (생계형저축) | 소득세 | 조특법§ 88의2 | 2019년 | 4,221 |
| 25.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 소득세 | 소득법§ 51①1 | - | 4,078 |

| 전체 국세감면액 | 상위 25개 항목 | 소득세(15개) | 법인세(4개) | 부가가치세(6개) |
|---|---|---|---|---|
| 353,325 (100.0%) | 291,564 (82.5%) | 160,246 (45.4%) | 57,146 (16.2%) | 74,172 (21.0%) |

주: 1) 일몰규정이 있는 항목(8개): 4, 6, 7, 8, 20, 21, 23, 24
제도 자체에는 일몰규정이 없으나 일부 내역에 대해서만 일몰규정 적용(3개): 1, 10, 16
2) 괄호( )안은 전체 국세감면액 대비 세부내역별 비중(%)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마. 일몰연도별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집계한 결과, 2016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출제도는 230개이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33.8조원 규모[12)]**

- 현재 일몰예정 항목은 2016년 27개, 2017년 49개, 2018년 75개, 2019년 1개 등 총 152개이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17.4조원 규모[13)]
- 일몰규정 없이 운용되는 78개 항목의 조세감면액은 총 16.4조원 규모이며, 평균 감면액 규모(2,096원)는 일몰항목(1,145억원)보다 크고 제도의 존속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평균 시행기간 21.3년)
- 반면에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평가는 일몰예정항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전체 감면액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일몰규정 없는 78개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12) 기획재정부 또한 조세지출 항목을 집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230개이며 이에 따른 감면액 규모는 34.3조원(경과규정 포함)
(기획재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6.3)

13) 조세지출 전체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은 부록 참조

## [표 10]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개, 억원, 년)

| | 누계 (A) | 일몰 예정 항목 | | | | 일몰 없는 항목(B) | 합계 (A+B) |
|---|---|---|---|---|---|---|---|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항목수 | 152 | 27 | 49 | 75 | 1 | 78 | 230 |
| (추정곤란 · 실적無) | (26) | (5) | (8) | (13) | (–) | (15) | (41) |
| 총 조세감면액 | 174,005 | 42,015 | 48,170 | 79,386 | 4,434 | 163,509 | 337,514 |
| 평균 감면액 | 1,145 | 1,556 | 983 | 1,058 | 4,434 | 2,096 | 1,467 |
| 평균 시행기간 | 14.0 | 11.4 | 13.8 | 15.0 | 17.0 | 21.3 | 16.5 |

주: 1) 동 자료는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15년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제도 신설 및 폐지를 반영하였으며, 경과규정 항목(51개, 6,099억원)은 집계에서 제외

2) 2014년 감면액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

3) 추정이 곤란하거나 실적이 없는 항목들은 감면액을 0으로 처리

4)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2016년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4조원)가, 2018년의 경우 R&D비용 세액공제(2.8조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1.4조원) 각각 포함.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운용현황

1. 개관 ····· 25
2. 소득세 ····· 29
3. 법인세 ····· 55
4. 부가가치세 등 ····· 61

# 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운용현황

## 1. 개 관

■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감면액의 82.5%를 차지하는 주요 25개 조세지출제도를 중심으로 운용현황 및 주요쟁점 관련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정리함

- 소득세 15개(조세감면액 합계 16.0조원), 법인세 4개(5.7조원), 부가가치세등 6개(7.4조원) 등 25개 항목(29.2조원)을 대상으로 함
- 세목 안에서는 감면액 규모 순으로 정리

[표 11] 세목별 조세지출 주요항목

(단위: 억원)

| 세목 | 주요 항목 | 2016년 조세지출액 |
|---|---|---|
| 소득세 (11개) | ①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24,120 |
| |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 19,321 |
| | ③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17,191 |
| | ④ 근로장려세제 | 13,018 |
| | ⑤ 자녀세액공제 | 12,399 |
| | ⑥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11,089 |
| |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9,182 |
| | ⑧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8,775 |
| | ⑨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8,162 |
| | ⑩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8,080 |
| | ⑪ 자녀장려세제 | 8,023 |
| | ⑫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7,748 |
| | ⑬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조세특례 | 5,181 |
| | ⑭ 비과세종합저축 | 4,100 |
| | ⑮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3,857 |
| | 소계(소득세) | 160,246 |

| 세목 | 주요 항목 | 2016년 조세지출액 |
|---|---|---|
| 법인세 (4개) | ① R&D 비용세액공제 | 28,499 |
| |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 | 16,995 |
| | ③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 7,237 |
| | ④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4,415 |
| | 소계(법인세) | 57,146 |
| 부가가치세 등 (6개) | ①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21,584 |
| | ②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 | 15,777 |
| | ③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13,472 |
| | ④ 신용카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13,013 |
| | ⑤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 5,248 |
| | ⑥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5,078 |
| | 소계(부가가치세등) | 74,172 |
| **주요항목 25개 합계** | | **291,564** |

주: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감면규모 비중(45.4%)이 상당하나 제도 특성상 법인세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표 12] 조세지출 상위 25개 주요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계속)

(단위: 억원)

| 주요 항목 | '02 | '03 | '04 | '05 | '06 |
|---|---|---|---|---|---|
| 1. R&D 비용세액공제 | 6,867 | 11,597 | 9,444 | 9,782 | 9,478 |
| 2. 보험료 특별공제 | 7,889 | 8,443 | 11,554 | 13,492 | 13,791 |
|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n/a | n/a | n/a | n/a | n/a |
| 4. 신용카드 소득공제 | 6,223 | 8,308 | 8,966 | 9,812 | 10,465 |
| 5.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n/a | n/a | n/a | n/a | n/a |
|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7,234 | 9,094 | 9,356 | 4,914 | 9,003 |
|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 7,882 | 7,475 | 8,763 | 10,292 | 11,606 |
| 8.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 12,083 | 13,200 | 14,488 | 14,487 | 17,779 |
| 9. 근로장려세제 | | | | | |
| 1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7,546 | 7,748 | 5,435 | 4,991 | 5,893 |
| 11. 자녀세액공제(구 다자녀공제 등) | 141 | 141 | 146 | 2,444 | 2,445 |
| 12. 교육비 특별공제 | 5,357 | 5,100 | 6,577 | 7,804 | 8,036 |
| 13. 연금계좌세액공제(구 연금저축 소득공제) | n/a | n/a | n/a | n/a | n/a |
| 14. 의료비 특별공제 | 2,524 | 2,768 | 3,315 | 3,799 | 3,974 |
| 15.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 4,022 | 4,702 | 4,448 | 5,067 | 5,045 |
| 16. 8년이상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1,630 | 3,840 | 4,677 | 4,448 | 7,737 |
| 17. 자녀장려세제 | | | | | |
| 1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5,324 | 6,604 | 4,833 | 6,012 | 6,742 |
| 19.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 3,551 | 4,083 | 4,530 | 5,295 | 5,390 |
| 20.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 3,045 | 3,497 | 4,464 | 5,018 | 5,846 |
| 21.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 3,323 | 3,242 | 2,622 | 2,154 | 2,769 |
| 22.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2,938 | 2,175 | 2,697 | 2,266 | 1,956 |
| 23.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528 | 13,019 | 18,134 | 25,439 | 20,681 |
| 24. 비과세종합저축(구 생계형저축) | 776 | 595 | 770 | 940 | 1,175 |
| 25.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 1,706 | 3,533 | 3,880 | 4,113 | 4,318 |
| **25개 항목 감면액 합계** | **96,730** | **119,305** | **129,245** | **145,013** | **156,574**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2] (계속)

(단위: 억원)

|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추정) | '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 1 | 14,080 | 16,460 | 15,535 | 18,571 | 23,341 | 25,567 | 28,850 | 27,860 | 28,188 | 28,499 | 10.7% |
| 2 | 15,771 | 20,285 | 21,269 | 20,268 | 18,259 | 19,087 | 21,569 | 24,139 | 23,912 | 24,120 | 8.3% |
| 3 | n/a | n/a | n/a | n/a | n/a | 20,691 | 22,490 | 20,550 | 21,574 | 21,584 | 1.1% |
| 4 | 12,506 | 15,171 | 18,934 | 18,405 | 11,729 | 11,697 | 13,720 | 15,708 | 18,163 | 19,321 | 8.4% |
| 5 | n/a | n/a | n/a | n/a | n/a | 11,890 | 13,632 | 14,913 | 16,553 | 17,191 | 9.7% |
| 6 | 10,215 | 12,239 | 12,793 | 11,978 | 10,953 | 12,829 | 12,640 | 13,812 | 16,508 | 16,995 | 6.3% |
| 7 | 13,627 | 15,198 | 15,814 | 14,117 | 14,117 | 14,136 | 13,155 | 15,717 | 15,307 | 15,777 | 5.1% |
| 8 | 18,976 | 14,801 | 15,287 | 15,406 | 15,349 | 15,237 | 15,065 | 14,523 | 13,881 | 13,472 | 0.8% |
| 9 | | 도입 | 4,537 | 4,344 | 4,020 | 6,140 | 5,618 | 7,765 | 11,918 | 13,018 | 16.3% |
| 10 | 6,992 | 8,451 | 10,036 | 12,325 | 13,831 | 14,405 | 13,667 | 13,888 | 13,484 | 13,013 | 4.0% |
| 11 | 3,335 | 6,481 | 7,072 | 6,335 | 5,329 | 5,467 | 5,723 | 5,868 | 11,670 | 12,399 | 37.7% |
| 12 | 8,812 | 11,001 | 12,299 | 12,749 | 11,773 | 10,736 | 10,393 | 10,803 | 10,426 | 11,089 | 5.3% |
| 13 | n/a | n/a | n/a | n/a | n/a | 7,838 | 8,998 | 9,184 | 8,640 | 9,182 | 4.0% |
| 14 | 3,972 | 5,966 | 6,881 | 7,340 | 5,989 | 5,945 | 6,567 | 7,113 | 8,250 | 8,775 | 9.3% |
| 15 | 6,054 | 8,516 | 7,818 | 7,958 | 8,758 | 8,774 | 9,447 | 9,865 | 7,817 | 8,162 | 5.2% |
| 16 | 9,915 | 9,992 | 18,779 | 16,542 | 13,107 | 12,569 | 12,757 | 13,618 | 9,748 | 8,080 | 12.1% |
| 17 | | | | | | | | 도입 | 8,023 | 8,023 | 0.0% |
| 18 | 4,020 | 4,929 | 5,708 | 5,563 | 6,224 | 7,593 | 8,648 | 8,459 | 8,096 | 7,748 | 2.7% |
| 19 | 6,670 | 6,540 | 6,398 | 6,080 | 8,421 | 8,512 | 9,861 | 6,944 | 6,988 | 7,237 | 5.2% |
| 20 | 5,243 | 5,496 | 5,188 | 6,090 | 6,732 | 6,653 | 6,494 | 6,547 | 5,780 | 5,248 | 4.0% |
| 21 | n/a | n/a | n/a | n/a | 5,665 | 7,943 | 8,934 | 8,943 | 8,681 | 5,181 | 3.2% |
| 22 | 2,111 | 2,354 | 2,769 | 2,322 | 2,055 | 2,192 | 2,131 | 6,297 | 6,178 | 5,078 | 4.0% |
| 23 | 18,247 | 21,148 | 20,032 | 17,700 | 27,371 | 21,243 | 17,727 | 11,349 | 8,938 | 4,415 | −2.8% |
| 24 | n/a | n/a | n/a | n/a | 3,992 | 4,290 | 4,434 | 4,100 | 4,221 | 4,100 | 12.6% |
| 25 | 7,567 | 8,327 | 8,400 | 3,830 | 2,989 | 3,284 | 3,497 | 3,857 | 4,078 | 3,857 | 6.0% |
| **합계** | **171,448** | **199,836** | **250,754** | **214,258** | **220,004** | **264,718** | **276,017** | **281,822** | **297,022** | **291,564** | **8.2%**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소득세

## 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신설연월일: 1976.12.2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율: 납부보험료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 공제한도: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각각 연 1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7,889 | 8,443 | 11,554 | 13,492 | 13,791 | 15,771 | 20,285 | 21,269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20,268 | 18,259 | 19,087 | 21,569 | 24,139 | 23,912 | 24,120 | 8.3% |

자료: 연도별「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2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
- 1999.8.31.
  -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만원으로 확대
- 2000.12.29.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설
  -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를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 2002.12.18.
  -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확대
- 2014.1.1.
  - 소득공제(100%)를 세액공제(12%)로 전환
  - 기존 조항(제52조)을 폐지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신설
- 2015.5.13.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신설연월일: 1999.8.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적용

  * 2015.7~2016.6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은 근로소득자 본인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 공제가능선: 총 급여의 25%

- 계산방식: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높은 항목 순으로 공제가능선을 채우고, 공제가능선을 초과한 금액부터 다음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
- 공제율
  - 신용카드(전통시장분 제외, 대중교통비* 제외) 15%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택시는 아님)
  - 이외(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분, 대중교통비) 30%
  - 다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2015.7~2016.6)으로 50% 적용
    **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 본인의 '16년 상반기, '15년 하반기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금액,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추가공제율 사용분)이 각각 '14년도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공제한도: 기본 최대 300만원 + 추가 최대 200만원
  - 기본: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추가: 전통시장사용분(100만원), 대중교통비사용분(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2)」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전자금융거래법(§ 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 확인금액 포함)사용금액
- 공제 제외항목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법인 관련 비용
  - 신용카드 등의 변칙 사용행위
  - 신규자동차 구입비 등
  -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금액(학원비 포함)
- 일몰기한: 2016.12.31.까지
  - 2016년 3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일몰도래항목 중 300억원 이상 항목)으로 선정되어 전문기관에서 평가중에 있음

- 수혜자: 근로소득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소득세 | 346 | 2,027 | 6,223 | 8,308 | 8,966 | 9,812 | 10,465 | 12,506 |
| | 2008 | 2009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 소득세 | 15,171 | 18,934 | 18,405 | 11,729 | 11,697 | 13,720 | 15,708 | 18,163 |
| | 2016 추정 | | | | | |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19,321 | | | | | | | 8.4% |

주: 연평균증감율은 시행 첫 해(9.1부터 적용)인 2000년을 제외한 2001~2016년 기준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주요 개정연혁

| 시행시기 | 적용대상 | 공제 가능선 | 공제율 | | | | 공제 한도 | 일몰 기한 |
|---|---|---|---|---|---|---|---|---|
| | | | 신용 | 체크 (직불) | 현금 영수증 | 기타 (추가공제) | | |
| 1999.9~ | 신용, 직불 | 총급여의 10% | 10% | | - | - | 300만원 | '02.11.30 |
| 2001.8~ | 〃 | 〃 | 20% | | - | - | 500만원 | 〃 |
| 2003~ | 학원 지로납부수강료 추가, 신규출고 자동차 구입액 제외 | 〃 | 20% | 30% | - | - | 〃 | '05.11.30 |
| 2004~ |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추가 | 〃 | 20% | | | - | 〃 | 〃 |
| 2005~ | 〃 | 15% | 〃 | | | - | 〃 | 〃 |
| 2006~ | 〃 | 〃 | 15% | | | - | 〃 | '07.11.30 |
| 2008~ | 기명식 전자화폐 추가 | 20% | 20% | | | - | 〃 | '09.12.31 |
| 2010~ | 〃 | 25% | 20% | 25% | 20% | - | 300만원 | '11.12.31 |
| 2012~ | 〃 | 〃 | 〃 | 30% | 〃 | 30% (전통) | 기본300 전통100 | '14.12.31 |
| 2013~ | 학원 지로납부 수강료 제외 | 〃 | 15% | 〃 | 30% | 〃 (대중교통 추가) | 기본300 전통100 대중100 | 〃 |
| 2015~ | 〃 | 〃 | 15% | 30% (일부 50%) | | 〃 | 〃 | '16.12.31 |
| 2016~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액 포함 | 〃 | 〃 | 〃 | | 〃 | 〃 | 〃 |

주: 1.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상관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동 항목 사용분에 한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

2. 2014년 세법개정 결과, '14년 하반기 및 '15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금액에 비해 증가한 경우 40% 소득공제율 적용

3. 2015년 세법개정 결과, '15년 하반기 및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금액에 비해 증가한 경우 50% 소득공제율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 **신설연월일: 2000.12.2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공제순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의 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후순위로 공제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국민연금 가입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 소득세 | 11,890 | 13,632 | 14,913 | 16,553 | 17,191 | 9.7% |

주: 2013년에 발간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항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이전 감면액 규모를 집계하지 않았음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0.12.29. 본조신설
  - 연금보험료 대상: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에 부담하는 기여금
- 2005.12.31.
  - 연금보험료 대상에 고용보험료 포함(단, 고용보험료와 연금저축금액의 합산액이 300만원인 경우까지만 공제 허용)
- 2014.12.31.

- 연금보험료 등 공제의 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만큼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제외함으로써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 라.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제100조의2~제100조의13)**

■ **신설연월일: 2006.12.26.**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통상 추석전 9월 지급)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급
  - 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부부가구), 수급자가 40세** 이상(2017년('16년 귀속소득에 해당) 이후)일 것
    - *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제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 ** 연령기준 완화(2015년까지 60세→2016년 50세→2017년~ 40세)
  - ②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 2,500만원(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 ③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
  - ④ 토지·건물·전세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시 장려금의 50%만 수급)
  -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 미보유자는 제외하나, 이 경우 한국 국적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는 해당)
  - ⑥ 기타: 기초생활수급자(2015년부터 적용),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 종교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가정 모두 수급 가능
- 일몰기한: 없음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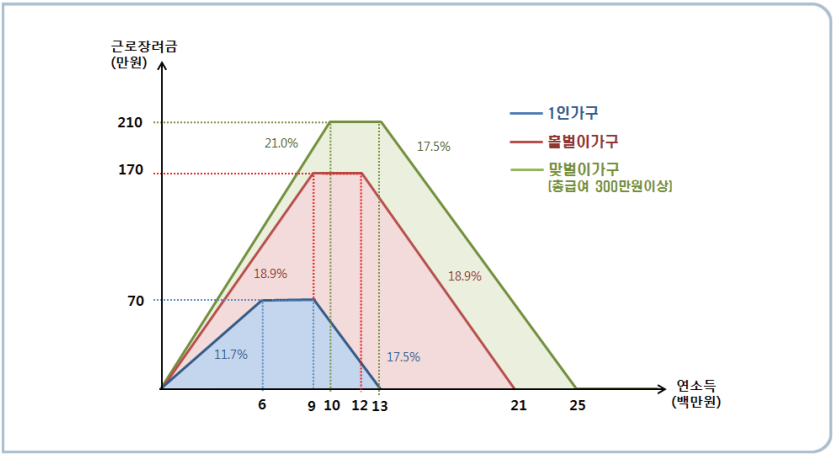


■ **수혜자: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기타감면(근로장려세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9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 소득세 | 4,537 | 4,344 | 4,020 | 6,140 | 5,618 | 7,765 | 11,918 | 13,018 | 16.3% |

주: 연평균증감율은 2009~2015년 기준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6.9.29.
  - 정부는 EITC 신설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08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 2006.12.22.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재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한 심사결과, EITC를 정부안 형태로 도입하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

- 2006.12.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EITC의 법적근거 마련
  - 2009년: 부양자녀가 있고 연 소득 1,700만원 미만인 부부가구에 한해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59만가구)
- 2012년(2011.12.31. 개정)
  - 부양자녀수별 차등지원(70~200만원) 및 무자녀가구 추가(+24만가구)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추가(+5만가구)
  - 1주택자의 주택가격요건 완화(5천만원→6천만원미만, +7만가구)
- 2013년(2013.1.1. 개정)
  - 60세 이상 단독가구 추가(+14만가구)
- 2014년(2014.1.1. 개정)
  - 부양자녀별 차등지원에서 가구유형별(단독가구, 부부가구) 차등지원으로 전환(+7만가구)
- 2015년(자영업자 외에는 2014.1.1. 개정)
  - 자영업자(2010.1.1. 개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대상에 추가
  -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요건 삭제 등 재산요건 완화
- 2016년(2014.1.1. 개정)
  - 50대 단독가구 추가(기획재정부 26만가구 전망)
- 2017년 예정(2014.1.1. 개정)
  - 40대 단독가구 추가(기획재정부 24만가구 전망)

## 마. 자녀세액공제(舊 자녀양육비공제 등)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舊 소득세법 제51조, 제51조의2)**

■ **신설연월일: 1995.12.29.(자녀양육비 소득공제), 2006.12.30.(다자녀 추가소득공제), 2007.12.31.(출산입양 소득공제)**
**→ 2014.1.1.(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 장려
- 공제금액(아래 표 참조)
  - 기본공제: 자녀 1명당 1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
  - 만6세이하공제: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 출생입양공제: 해당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및 입양신고를 한 입양자 1명당 30만원
- 제한사항: 자녀장려금과 중복수혜 불가
- 일몰기한: 없음
- 자녀수별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 구분 | 자녀수별 세액공제액 | | | | | |
|---|---|---|---|---|---|---|
| 기본공제 | 자녀수 | 1 | 2 | 3 | 4 | 5 |
| | 공제액 | 15 | 30 | 60 | 90 | 120 |
| 만6세이하공제 | 자녀수 | 1 | 2 | 3 | 4 | 5 |
| | 공제액 | – | 15 | 30 | 45 | 60 |
| 출생입양공제 | 자녀수 | 1 | 2 | 3 | 4 | 5 |
| | 공제액 | 30 | 60 | 90 | 120 | 15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혜자: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소득세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전체 | 141 | 141 | 146 | 2,444 | 2,445 | 3,335 | 6,481 | 7,072 |
| 자녀양육비공제 | 141 | 141 | 146 | 2,444 | 2,445 | 3,335 | 3,637 | 3,459 |
| 출산입양공제 | | | | | | | '09도입 | 856 |
| 다자녀공제 | | | | | | '08도입 | 2,844 | 2,757 |
| 소득세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전체 | 6,335 | 5,329 | 5,467 | 5,723 | 5,868 | 11,670 | 12,399 | 37.7% |
| 자녀양육비공제 | 3,048 | 2,457 | 1,801 | 1,923 | n/a | 통합폐지 | | |
| 출산입양공제 | 750 | 637 | 448 | 494 | n/a | 통합폐지 | | |
| 다자녀공제 | 2,537 | 2,235 | 3,218 | 3,306 | n/a | 통합폐지 | |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주요 개정연혁

- 2014.1.1.
  - 기존 6세이하공제, 출산입양공제, 다자녀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통합하여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하되, 2013년 무상보육 확대 등을 이유로 6세이하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관련 내용은 폐지하고 다자녀공제만 존속
- 2015.5.13.
  - 2015년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 6세이하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모두 재도입되고,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부칙 제13282호)

| 공제액 | | '96~'03 | '04~'06 | '07 | '08 | '09~'10 | '11~'13 | '14~'16 |
|---|---|---|---|---|---|---|---|---|
| 기존 자녀 관련 소득공제 | | | | | | | | |
| | 6세이하공제 |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폐지 |
| | 출산입양공제 | | | | 200 | 200 | 200 | 폐지 |
| | 다자녀공제 | | | 50 [1] | 50 | 50 | 100~200 [2] | 폐지 |
| 자녀세액공제 | | | | | | | | 신설 |

주: 1) 둘째부터 소득공제 적용
2)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씩 소득공제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4 제3항(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신설연월일: 1977.12.1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없음)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15%
- 공제한도
  - 근로자·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 부양가족(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연 300만원
  - 부양가족(대학생) : 연 9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5,357 | 5,100 | 6,577 | 7,804 | 8,036 | 8,812 | 11,001 | 12,299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12,749 | 11,773 | 10,736 | 10,393 | 10,803 | 10,426 | 11,089 | 5.3%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12.
  - 거주자와 직계비속 등의 학교(유치원과 대학원 제외)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에 대한 소득공제

- 1995.12.29.
  - 직계비속의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연 230만원, 유치원아 연 70만원으로 확대
- 1998.12.28.
  - 직계비속 등이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연 150만원으로 소득공제 설정
- 1999.8.31.
  - 직계비속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연 150만원, 취학전아동(학원 수강료 포함) 연 100만원으로 확대
- 2001.12.31.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50만원으로 설정
- 2002.12.18.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500만원, 초·중·고등학생 연 200만원, 취학전아동 연 150만원으로 확대
- 2003.12.30.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700만원으로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의 소득공제 한도 폐지
- 2008.12.26.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및 취학전아동 연 300만원으로 확대
- 2014.1.1.
  - 소득공제(100%)를 세액공제(15%)로 전환
  - 기존 조항(제52조)을 폐지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신설

## 사. 연금계좌세액공제(舊 연금저축 소득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신설연월일: 2000.12.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계좌납입액중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5,500만원 이하): 15%
  - 이외: 12%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총합: 연 7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 소득세 | 7,838 | 8,998 | 9,184 | 8,640 | 9,182 | 4.0% |

주: 2013년에 발간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항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이전 감면액 규모를 집계하지 않았음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신설
  - 연금저축에 납입액 중 연 240만원까지 공제가능
- 2005.12.31.
  - 최대공제금액을 연 300만원으로 확대
- 2010.12.27.
  - 최대공제금액을 연 400만원으로 확대
-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폐지하고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동일한 내용 신설

- 2014.1.1.
  - 소득공제(100%)를 세액공제(12%)로 전환하면서
  -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설
- 2014.12.13.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액입의 합산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미적용
- 2015.5.13.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15%로 인상
  -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 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舊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 **신설연월일: 1977.12.1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공제한도
  - 본인·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장애인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2,524 | 2,768 | 3,315 | 3,799 | 3,974 | 3,972 | 5,966 | 6,881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7,340 | 5,989 | 5,945 | 6,567 | 7,113 | 8,250 | 8,775 | 9.3% |

자료: 연도별「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주요 개정연혁

- 1994.12.12.
  -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1999.8.31.
  -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
- 2000.12.29.
  -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
- 2002.12.18.
  -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 2003.12.30.
  - 거주자,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만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소득공제
- 2008.12.26.
  - 거주자,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
- 2014.1.1.
  -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로 전환

## 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舊 소득세법 제52조 6항)**

■ **신설연월일: 1981.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대상금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총합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
- 공제율: 15%(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한도: 법정기부금(없음),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30%)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복지 · 문화 · 교육 · 종교 등 관련단체 및 기부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4,022 | 4,702 | 4,448 | 5,067 | 5,045 | 6,054 | 8,516 | 7,818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7,958 | 8,758 | 8,774 | 9,447 | 9,865 | 7,817 | 8,162 | 5.2%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22.
  - 근로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기부금(필요경비 제외) 소득공제
- 2000.10.23.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제외)의 10%

- 2007.12.31.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
- 2009.12.31.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 이월하여 공제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 2010.12.27.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확대
- 2009.12.31.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 3년으로 확대
- 2014.1.1.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 단 3천만원 초과분은 25%)로 전환
- 2015.12.15.
  -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완화(3천만원→2천만원)하고, 해당하는 세액공제율을 인상(25%→30%)

## 차.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제69조의2(축사용지)**

■ **신설연월일: 1986.12.26.**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제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일몰기한: 없음(다만,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 **수혜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 축산농가(폐업을 전제)**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양도소득세)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1,630 | 3,840 | 4,677 | 4,448 | 7,737 | 9,915 | 9,992 | 18,779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16,542 | 13,107 | 12,569 | 12,757 | 13,618 | 9,748 | 8,080 | 12.1%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86.12.26.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1998.12.28.
  - 기존 감면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 2001.12.29.
  -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상업지역등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전액감면 적용
- 2002.12.11.
  - 농업법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함
- 2003.12.30.
  -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함
- 2004.12.31.
  - 기존 감면조건에는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했으나, 이를 "직접 경작"으로 개정하여 연속성과 관련한 감면조건을 완화
- 2005.12.29.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법인등에 2010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예외로 함

- 2005.12.31.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를 농업법인등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조항 일몰폐지
- 2005.12.29.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법인등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함
- 2010.12.27.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토지의 양도관련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
- 2011.7.25.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2013.1.1.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토지의 양도관련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
- 2014.2.21. (시행령 개정)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축산·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 2015.2.3. (시행령 개정)
  - 거주지와 농지간의 거리를 기존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로 확대
- 2015.12.15.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토지의 양도관련 일몰을 "201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1명당 축사용지 한도를 990㎡에서 1,650㎡로 변경

## 카.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 (제100조의27~제100조의31)**
- **신설연월일: 2014.1.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을 위해 세금환급방식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통상 추석전 9월 지급)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급
    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단, 생계급여수급자는 제외)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제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②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③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이며
    ④ 토지·건물·전세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
    (단, EITC와 달리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초과해도 장려금 전액 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려금 신청 연도 3월 기준)는 제외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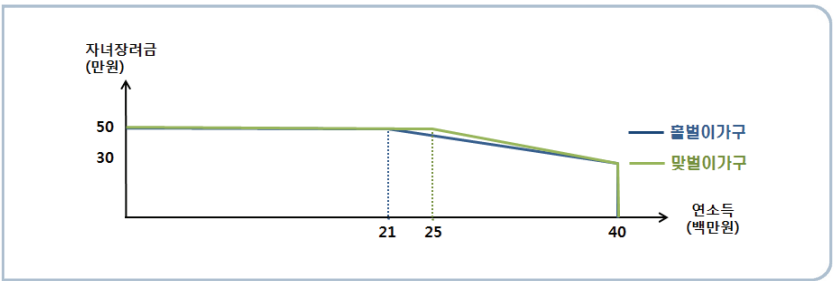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기타감면(근로장려세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15년 6,417억원(국세청 실적), '16년 8,023억원(추정)
- 주요 개정연혁: 2014.1.1. 2015년 자녀장려세제 시행

## 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 신설연월일: 1994.12.2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비과세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사업자 및 사업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5,324 | 6,604 | 4,833 | 6,012 | 6,742 | 4,020 | 4,929 | 5,708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5,563 | 6,224 | 7,593 | 8,648 | 8,459 | 8,096 | 7,748 | 2.7%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22.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2013.1.1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그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조항에서 삭제.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법조항을 정비한 것임.제311회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조세소위원회), 2012.11.5., 19~20쪽)

## 파.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조세특례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 **신설연월일: 1975.12.2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가입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혜택
  - 출자금: (한도 1천만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5% 세율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9% 저율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합산
  - 예탁금: (한도 3천만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5% 세율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9% 저율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합산,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 **수혜자: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조합원·회원 등**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및 저율과세**
- **감면세목: 소득세**

##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3,323 | 3,242 | 2,622 | 2,154 | 2,769 | n/a | n/a | n/a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n/a | 5,665 | 7,943 | 8,934 | 8,943 | 8,681 | 5,181 | 3.2% |

주: 2007~2010년의 경우,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다수의 금융상품을 합산하여 조세지출액을 집계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감면액 규모 미발표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주요 개정연혁

- 2000.12.29.
  - (출자금) 1인당 1천만원의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
  - (예탁금) 1인당 2천만원의 한도로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00.1.1~'03.12.31), 5% 저율과세('04.1.1~'04.12.31)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05.1.1~) 신설
- 2003.12.30.
  - (예탁금)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4.1.1~'06.12.31), 5% 저율과세('07.1.1~'07.12.31)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08.1.1~)로 확대
- 2006.12.30.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09.12.31)을 신설
  - (예탁금)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07.12.31), 5%('10.1.1~'10.12.31) 및 9% 저율과세('11.1.1~)로 확대
- 2008.12.26.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확대(~'12.12.31)
  - (예탁금) 1인당 3천만원의 한도로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12.12.31), 5%('13.1.1~'13.12.31) 및 9% 저율과세('14.1.1~)로 확대
- 2013.1.1.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확대(~'15.12.31)
  - (예탁금)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15.12.31),

5%('16.1.1~'16.12.31) 및 9% 저율과세('17.1.1~)로 확대

- 2015.12.15.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비과세(~'18.12.31), 5%('19.1.1~'19.12.31) 및 9% 저율과세('20.1.1~)로 확대
  -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18.12.31), 5%('19.1.1~'19.12.31) 및 9% 저율과세('20.1.1~)로 확대

## 하. 비과세종합저축(舊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신설연월일: 2000.10.2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노인·장애인 등의 5천만원 이하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일몰기한: 2019.12.31.까지

■ **수혜자: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776 | 595 | 770 | 940 | 1,175 | n/a | n/a | n/a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n/a | 3,992 | 4,290 | 4,434 | 4,100 | 4,221 | 4,100 | 12.6% |

주: 2007~2010년의 경우,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다수의 금융상품을 합산하여 조세지출액을 집계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감면액 규모 미발표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0.10.21.
  - 60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등의 2천만원 이하 저축(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 2004.7.26.
  - 생계형저축 한도를 3천만원으로 인상
- 2006.12.30.
  - 생계형저축 비과세에 대한 일몰을 설정(~2008년 12월 31일 가입)
- 2008.12.26.
  - 일몰 연장(~2011년 12월 31일 가입)
- 2011.12.31.
  - 일몰 연장(~2014년 12월 31일 가입)
- 2014.12.23.
  - 종전 "생계형저축"의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하고, 일몰 연장(~2019년 12월 31일 가입)
  - 비과세저축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로 상향조정

## 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신설연월일: 1994.12.1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1명당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는 종합소득자**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소득세 | 1,706 | 3,533 | 3,880 | 4,113 | 4,318 | 7,567 | 8,327 | 8,400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소득세 | 3,830 | 2,989 | 3,284 | 3,497 | 3,857 | 4,078 | 3,857 | 6.0%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12.
  -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 1명당 연 50만원 공제 신설
- 2001.12.31.
  -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
- 2003.12.30.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 연 100만원 추가공제를 유지하되,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15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
- 2008.12.26.
  - 경로우대자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소득공제액을 연 100만원으로 설정

# 3. 법인세

## 가. R&D비용 세액공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설연월일: 2000.12.2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의 20% 공제 (중소기업은 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①, ②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당기분: 당해연도 지출액 × 2~3%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② 증가분: 직전 연도지출액 초과분 × 40% (중소기업 50%)
- 일몰기한: 없음(단, 신성장동력사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수혜자: 내국인**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세액공제**

■ **감면세목: 법인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법인세, 소득세 | 6,867 | 11,597 | 9,444 | 9,782 | 9,478 | 14,080 | 16,460 | 15,535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법인세, 소득세 | 18,571 | 23,341 | 25,567 | 28,850 | 27,860 | 28,188 | 28,499 | 10.7%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7.12.31
  - 대기업: 증가분 40%(위탁분 50%), 당기분 3~6% 중 선택
- 2008.12.26
  - 일몰 폐지, 제도 영구화
  - 중소기업: 증가분 50%, 당기분 25% 중 선택
- 2010.1.1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부문 도입: 당기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 2010.12.2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4년 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 2013.1.1.
  - 2015.12.31.까지 신성장·원천기술 부문 세액공제 일몰연장
  - 당기분 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8%)
- 2014.1.1
  - 대기업 당기분 공제 한도 축소: 3~6% → 3~4%('14년 이후)
- 2014.12.23
  - 대기업 당기분 공제 한도 축소: 3~4%→ 2~3%('15년 이후)
- 2015.12.15
  - 2018.12.31.까지 신성장·원천기술 부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몰연장

##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신설연월일: 1993.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상당액을 감면
- 감면율

| 감면업종 | 소기업 | | 중기업 | |
|---|---|---|---|---|
| | 수도권 | 수도권외 | 수도권 | 수도권외 |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 – | 5% |
| 도소매업, 의료업 외 | 20% | 30% | – | 15% |
| 지식기반사업 | | | 10% | |

- 일몰기한: 2017.12.31.까지

■ **수혜자: 중소기업**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세액감면**

■ **감면세목: 법인세·종합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법인세 소득세 | 7,234 | 9,094 | 9,356 | 4,914 | 9,003 | 10,215 | 12,239 | 12,793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법인세 소득세 | 11,978 | 10,953 | 12,829 | 12,640 | 13,812 | 16,508 | 16,995 | 6.3%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3.12.30
  - 인센티브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율 하향조정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5%,
  - 수도권내 소기업: 20%→10%, 수도권외 중소기업: 30%→15%
- 2004.12.31
  - 경기침체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감면율 이전 수준으로 상향조정
- ○2009.1.1. ~ 2014.12.23
  - 대상업종 추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등
- 2014.12.23
  - 주택임대관리업 감면 추가
  - 2017.12.31.까지 일몰연장
- 2015.12.15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종 감면 추가

## 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 감면근거: 법인세법 제24조

■ **신설연월일: 1998.12.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 2.0% 달성 등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 공제율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복지 · 문화 · 교육 · 종교 등 관련단체 및 기부 법인**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기타(손금산입)**

■ **감면세목: 법인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법인세 | 3,551 | 4,083 | 4,530 | 5,295 | 5,390 | 6,670 | 6,540 | 6,398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법인세 | 6,080 | 8,421 | 8,512 | 9,861 | 6,944 | 6,988 | 7,237 | 5.2%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9.12.31
  -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3년→5년
- 2010.12.30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득금액의 5%내→10%내
- 2011.12.31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1년→3년), 공공교육기관 추가, 비영리 교육재단 지원 확대
- 2013.1.1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전공대학'을 대상에 추가

• 2014.1.1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3년→5년

## 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舊임시투자세액공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신설연월일: 1981.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내국인이 신규투자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

• 일몰기한: 2017.12.31.까지

■ **수혜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세액공제**

■ **감면세목: 법인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법인세 | 6,528 | 13,019 | 18,134 | 25,439 | 20,681 | 18,247 | 21,148 | 20,032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법인세 | 17,700 | 27,371 | 21,243 | 17,727 | 11,349 | 8,938 | 4,415 | -2.8%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10.12.27.
  - 임투공제율 하향조정(수도권밖 기준 7% → 5%), 고투공제 신설(1%)
- 2011.12.31.
  - 임투공제의 고투공제 전환
    : (일반기업) 기본 4% + 추가 2% (중소기업) 기본 4% + 추가 3%
- 2013.1.1.
  - 대기업 기본공제율 하향조정(4% → 3%)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기본공제를 허용
- 2013.8.13.
  - 대기업 기본공제율 하향조정(3% → 2%), 단 중견기업 기본공제율은 3% 유지
- 2014.12.23.
  - 2017.12.31.까지 일몰 연장
  - 기본공제: 대기업 폐지(2% → 0%),
    중견기업 공제율 하향조정(3% → 2%),
  - 추가공제: 대기업 3% 유지, 중소 및 중견기업 1%p 인상(3% → 4%),
    서비스업 / 지방투자 추가공제율 1%p 인상(대기업 최대 5%, 중소/중견기업 최대 6%)

# 4. 부가가치세 등

## 가.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감면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신설연월일: 1976.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 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면세농산물가액의 104분의 4)
    개인사업자(108분의 8), 그 외(106분의 6)
  - 제조업: 면세농산물가액의 104분의 4
  - 그 외: 면세 농산물가액의 102분의 2
- 공제한도
  - 개인사업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공제율 × 50%
  - 법인사업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공제율 × 30%
- 일몰기한: 없음(단, 공제한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주는 규정은 2016.12.31.까지)

■ **수혜자: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 창출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기타(매입세액공제 특례)**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 부가가치세 | 20,691 | 22,490 | 20,550 | 21,574 | 21,584 | 1.1% |

자료: 연도별「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3.12.31.
  - 당초 동 법률제정시 제조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의제매입세입공제는 공제율을 중심으로 1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 연도 | 1977.3. | 1988.7. | 2000.3. | 2010.3. | 2013.2. |
|---|---|---|---|---|---|
| 공제율 | 13/113 | 국내생산 5/105<br>수입농산물 3/105 | 일반업종 3/103<br>음식업 5/105 | 일반업종 2/102<br>음식업 3/103 (과세유흥 4/104) | 일반업종 2/102<br>음식업 -법인6/106, -개인8/108 (과세유흥 및, 중소제조업 4/10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14.1.1.
  - 공제한도 설정(부당공제 방지목적)
  - 공제한도 매출액(공급 과세표준) 30%. 개인의 경우 매출액 2억원 이하 50%이며, 2억원 초과 40%.
    (단,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1억원 이하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5%를 2015.12.31.까지 적용)
- 2015.2.3. 시행령 개정
  - 법인사업자 및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한도특례(법인 35%, 개인 45~60%)의 적용기한을 2016.12.31.로 1년 연장

## 나.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신설연월일: 1988.12.26.**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비료·농약·사료 등 농민, 어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어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 일몰기한: 2017.12.31.까지
- **수혜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종사자**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완전면세)**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부가가치세 | 7,882 | 7,475 | 8,763 | 10,292 | 11,606 | 13,627 | 15,198 | 15,814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부가가치세 | 14,117 | 14,117 | 14,136 | 13,155 | 15,717 | 15,307 | 15,777 | 5.1%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2.12.8.
  - 임업용 기자재까지 확대
- 1994.12.22.
  - 축산용 기자재까지 확대
- 2004.12.31.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까지 확대

## 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신설연월일: 1971.12.2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 일몰기한: 2018.12.31.까지

■ 수혜자: 농민, 임업인, 어민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면제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부가가치세 | 12,083 | 13,200 | 14,488 | 14,487 | 17,779 | 18,976 | 14,801 | 15,287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부가가치세 | 15,406 | 15,349 | 15,237 | 15,065 | 14,523 | 13,881 | 13,472 | 0.8%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89.12.30.
  - 종전 연근해어업용 선박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것을 농업용까지 확대
- 2002.12.11.
  - 임업용까지 확대

## 라. 신용카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감면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설연월일: 1993.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
  - 그 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일몰기한: 없음(단, 추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2016.12.31.까지)

■ **수혜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부가가치세 | 7,546 | 7,748 | 5,435 | 4,991 | 5,893 | 6,992 | 8,451 | 10,036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부가가치세 | 12,325 | 13,831 | 14,405 | 13,667 | 13,888 | 13,484 | 13,013 | 4.0%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5.12.29.
  - 공제율을 5%에서 1%로 하향조정
- 1998.12.28.
  - 연간 300만원 한도설정
- 1999.12.28.
  - 법인사업자 제외
  - 공제율(2%) 및 한도액(500만원)의 상향조정
- 2003.12.30.
  - 신용카드 등에 현금영수증 포함
  - 공제율 1%로 하향조정
- 2004.12.31.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로 상향조정
- 2007.12.31.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로 상향조정

- 2015.12.15.
  - 일정 매출액(10억원, 시행령 사항)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

## 마.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 **신설연월일: 1992.1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제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105분의 5)
  - 중고품: 취득가액의 109분의 9
- 재활용 폐자원의 공제한도
  - 폐자원매출과세표준×80%-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 일몰기한: 2016.12.31까지

■ **수혜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수집자**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기타(매입세액공제 특례)**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부가가치세 | 3,045 | 3,497 | 4,464 | 5,018 | 5,846 | 5,243 | 5,496 | 5,188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부가가치세 | 6,090 | 6,732 | 6,653 | 6,494 | 6,547 | 5,780 | 5,248 | 4.0% |

자료: 연도별「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주요 개정연혁

- 2005.7.13.
  -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서 규정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108분의 8), 중고품(110분의 10)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취득가액의 8/108 → 6/106
    : 공급가액의 80%(2007말까지 90%) 한도 내에서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0.1.1.
  - 중고자동차 :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0/110
    :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109
- 2014.1.1.
  - 일몰연장: 2013.12.31. →2016.12.31
  -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105분의 5로 함)
  - 중고자동차: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가액의 109분의 9
- 2014.12.23.
  - 중고자동차(9/109) 일몰연장: 2014.12.31. →2016.12.31.
- 2016년 3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문기관에서 평가중

## 바.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신설연월일:** 1977.12.1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자가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방위산업체 등**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완전면세)**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부가가치세 | 2,938 | 2,175 | 2,697 | 2,266 | 1,956 | 2,111 | 2,354 | 2,769 |
| | 20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추정 | 2016 추정 | 연평균 증가율 |
| 부가가치세 | 2,322 | 2,055 | 2,192 | 2,131 | 6,297 | 6,178 | 5,078 | 4.0%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82. 12.21.
    - 경찰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군수물자 포함
  - 1983. 12.31.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물자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로 개정

- 1989.12.30.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까지 확대

# Ⅲ. 최근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최근 동향 ..... 73
2. 주요 논의 사항 ..... 74

# Ⅲ. 최근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 1. 최근 동향

■ **정부는 그 동안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2006~2015년 동안 140개 항목을 신설한데 반해, 폐지는 133개 항목에 그침**

※ 현재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만 발표되고 있고,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 신설 및 정비 등이 반영된 "조세지출결산서"는 발표되고 있지 않음

- 동 수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실제 국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면 그 항목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행정부의 조세지출 정비에 대한 정책의지를 살펴볼 수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4개 조세지출항목을 신설하고 13.3개 항목을 폐지하는 등 매년 평균 0.7개씩 조세지출항목을 증가 추진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전에는 정부제안 조세지출 항목수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표 13] **조세지출 정비내역 추이(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06~2015년**

(단위: 개)

|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합계** | **평균** |
|---|---|---|---|---|---|---|---|---|---|---|---|---|
| 신설(A) | 15 | 17 | 16 | 25 | 15 | 16 | 5 | 10 | 6 | 15 | **140** | **14.0** |
| 폐지(B) | 13 | 6 | 7 | 18 | 14 | 9 | 21 | 19 | 7 | 19 | **133** | **13.3** |
| 순증(A-B) | 2 | 11 | 9 | 7 | 1 | 7 | △16 | △9 | △1 | △4 | **7** | **0.7** |

주: 2015년의 경우 행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신설 및 폐지 항목을 뜻하며, 실제 국회의결에 따른 최종 결과값은 동 항목수와 다를 수 있으며,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가 신설되더라도 그 적용시기는 통상 2016년부터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5.10, 24쪽

# 2. 주요 논의 사항

## 가. 조세지출 범위

■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규정(폐지가능성, 특정성)이 있으나, 규정이 애매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조세지출 항목의 범위가 임의적이어서 정확한 항목수와 감면규모 파악이 어려움**

- 예를 들어, 2013년에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기존에는 조세지출항목으로 집계되지 않던 4개 항목(2013년 감면액 4.6조원)이 추가된 바 있음
- OECD는 조세지출제도의 개념을 "조세체계상의 일반표준(norm)인 기준조세체계를 벗어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출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지정
  - 스웨덴의 경우, 미실현 조세수입(조세수입이 사전에 정의된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도출된 금액)과 실제 조세수입의 차액을 조세지출로 간주(광의)[14]

## 나. 전체 조세지출항목으로 일몰도입 확대

■ **조세지출 심층평가가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 중 일몰 없는 항목의 비중이 상당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미비점(loophole)이 발생**

- 2016년 조세지출제도 230개 중 78개 항목(33.9%)이 일몰규정 없이 영구화 되어 있는데, 전체 조세지출액 33.8조원 중 이들의 조세지출액이 16.4조원(48.4%)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세지출 규모가 1천억원~2조원을 상회하는 항목들이 다수 있음
-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대체로 일몰도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몰규정이 부재한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재정지출 사업의 엄격한 관리제도 준용의 필요성, 조세지출의 폐지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심도**

14) 스위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

있는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조금 성격의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재정지출과 같이 평가를 통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
- 재정지출의 경우 매년 예산 또는 결산 시에 사업별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폐지 및 조정이 이루어지나, 조세지출은 제도 도입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평가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
- 현재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가 일몰이 도래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일몰 규정이 전제되어야 함
  - 2006년의 경우 정부는 일몰 없이 운용되던 32개 항목에 대해 일몰 신설
- 일몰규정이 없는 조세지출의 경우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기는 하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폐지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일몰규정을 도입해 현행 제도 내에서 일원화할 필요

■ **다만, 조세지출의 경우 정책 목표를 감안한 제도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일몰 기간을 단기(2~3년)와 중기(4~7년) 등으로 차등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소득공제나 기본공제 등과 같이 '담세력'(ability to pay) 측정에 관련된 부분은 구조적 조세감면(structural reliefs)의 성격으로서 기준조세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정책적 지원 성격을 갖는 조세지출과는 구분
- 정책척 지원 성격의 조세지출은 정책목표나 제도별 특성 등에 따라 일몰기간을 단기(2~3년)나 중기(4~7년)로 차등화하여 일몰기간을 적용
- 단기적 정책 목표에 따라 도입된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다수 일몰 규정이 있는 제도에서와 같이 비교적 짧은 2~3년의 일몰 주기를 둘 수 있음
- 정책 목적이 경제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문제 등 중·장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해당 일몰 규정을 4~7년 정도로 보다 길게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R&D비용 세액공제,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나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장기적 운영이 필요한 조세지출제도에 해당될 것임

## 다. 환급형 세액공제 회계처리문제

■ **현재 환급가능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제도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은 세출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 조세지출 항목으로 집계되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음**

*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개인이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국가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이에 해당됨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포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3항)"으로 간주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절차에 따름
  - 감면액 규모: 2014년(0.8조원), 2015년(1.7조원)
- 현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사실상 복지지출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그 규모만큼 국세수입을 과소 집계

■ **현재 16개국에서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오랫동안 운용해 온 미국과 영국의 경우 현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출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

- OECD 국가 중 미국(1975년 도입)·영국(1988년)·스웨덴(2007년) 등 16개 국가에서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 운영
-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해 온 미국(42년)과 영국(29년)의 GDP 대비 EITC·CTC 규모는 우리나라(0.11%)의 6배, 15배로 상당한 수준
- 미국은 EITC 및 CTC 총지급액 1,150억달러 중 체납세액이나 납부예정세액으로 상쇄되는 261억달러에 대해서는 총수입에서 공제(Deduction of Receipts)하여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액 889억달러는 총지출(Outlays) 처리
  - 미국의 소득세와 EITC·CTC 신고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로 동일

[표 1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회계처리 비교: 2015년

(단위: 백만달러, 백만파운드, 억원)

| | 체납세액등 (세입감면) | 현금지급액 (세출) | 총지급액 | | |
|---|---|---|---|---|---|
| | | | | GDP 대비 | 한국 대비 |
| | A | B | C=A+B | | |
| 미국(백만달러) [1] | 26,100 | 88,870 | 114,970 | 0.64% | 6.0배 |
| 영국 [1][2] | 2,635 [3] | 25,907 [3] | 28,542 | 1.58% | 14.8배 |
| 우리나라 | 490 [4] | 16,144 [4] | 16,634 | 0.11% | – |

주: 1) 미국과 영국은 체납세액 및 납부예정세액 동의 상쇄분에 대해서만 조세지출액(Tax Expenditure)으로 집계하며, 실지급액(B)은 세출항목(Outlays) 관리

2) 영국의 귀속연도는 2015~2016년 예산 기준이며,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와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을 합산하여 집계. 단, 체납세액

3) 체납세액이 집계되지 않아, 2013-14년 회계연도 현금지급비율 90.8% 이용

4) 우리나라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체납세액 등으로 상쇄된 근로장려금을 따로 집계하지 않으나,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체납세액 비율은 2.9% (=228/7,517). 동 수치를 이용하여 2015년 체납세액 추정치 계산

자료: OMB(미국), HMRC(영국), 국세청(한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환급가능형 조세지출항목을 세출항목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국세수입이 감면액 규모만큼 증가하여(1.7조원), 이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 등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지출이 증가하게 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세출항목으로 관리할 경우 국세수입이 감면액 규모만큼 증가
-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지방으로 이전됨

## 라. 지방세감면 통제·관리 필요

■ **국세 비과세·감면(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및 전문기관의 사전통제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지방세 비과세·감면(행정자치부 소관)에 대해서는 통제·관리가 부족한 실정**

- 2014년 실적 기준 국세감면액은 34.3조원, 지방세감면액은 국세감면액의 37.9%인 13.0조원으로 지방세감면액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이며, 지방세감면율

(17.4%)이 국세감면율(14.3%)에 비해 높은 편임

-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13.0조원 중 99.2%인 12.9조원이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현재 심층평가 등을 통해 통제가 되고 있는 국세감면과 비교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국세 비과세 · 감면에 준하는 통제 및 성과관리를 지방세에도 적용하여 일원화할 필요

[표 15]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1980~2016년**

(단위: 억원)

| | 국세 | | | 지방세 | | |
|---|---|---|---|---|---|---|
| | 징수액 (A) | 감면액 (B) | 감면율 [B/(A+B)] | 징수액 (C) | 감면액 (D) | 감면율 [D/(C+D)] |
| 1980 | 58,077 | n/a | n/a | 7,677 | 1,084 | 12.4% |
| 1981 | 72,579 | 5,767 | 7.4% | 9,144 | 1,379 | 13.1% |
| 1982 | 83,965 | 6,860 | 7.6% | 11,192 | 1,240 | 10.0% |
| 1983 | 100,507 | 6,425 | 6.0% | 13,972 | 1,727 | 11.0% |
| 1984 | 108,997 | 7,271 | 6.3% | 15,084 | 1,506 | 9.1% |
| 1985 | 118,764 | 10,110 | 7.8% | 16,546 | 1,400 | 7.8% |
| 1986 | 136,063 | 13,645 | 9.1% | 18,098 | 1,408 | 7.2% |
| 1987 | 163,437 | 19,272 | 10.5% | 21,923 | 1,346 | 5.8% |
| 1988 | 194,842 | 21,295 | 9.9% | 31,000 | 2,245 | 6.8% |
| 1989 | 212,341 | 23,895 | 10.1% | 49,608 | 3,996 | 7.5% |
| 1990 | 268,474 | 29,722 | 10.0% | 63,674 | 4,021 | 5.9% |
| 1991 | 303,198 | 32,167 | 9.6% | 80,351 | 5,438 | 6.3% |
| 1992 | 352,184 | n/a | n/a | 94,622 | 15,880 | 14.4% |
| 1993 | 392,606 | n/a | n/a | 110,261 | 15,549 | 12.4% |
| 1994 | 472,617 | n/a | n/a | 132,309 | 15,206 | 10.3% |
| 1995 | 567,745 | n/a | n/a | 153,160 | 14,890 | 8.9% |
| 1996 | 649,602 | n/a | n/a | 173,947 | 15,508 | 8.2% |
| 1997 | 699,277 | n/a | n/a | 184,057 | 18,039 | 8.9% |
| 1998 | 677,977 | 77,305 | 10.2% | 171,497 | 20,204 | 10.5% |
| 1999 | 756,580 | 105,418 | 12.2% | 185,861 | 21,170 | 10.2% |
| 2000 | 929,347 | 132,824 | 12.5% | 206,006 | 23,436 | 10.2% |
| 2001 | 957,928 | 137,298 | 12.5% | 266,649 | 27,683 | 9.4% |
| 2002 | 1,039,678 | 147,261 | 12.4% | 315,257 | 32,419 | 9.3% |

(단위: 억원)

| | 국세 | | | 지방세 | | |
|---|---|---|---|---|---|---|
| | 징수액 (A) | 감면액 (B) | 감면율 [B/(A+B)] | 징수액 (C) | 감면액 (D) | 감면율 [D/(C+D)] |
| 2003 | 1,146,642 | 175,080 | 13.2% | 331,329 | 26,726 | 7.5% |
| 2004 | 1,177,957 | 182,862 | 13.4% | 342,017 | 32,150 | 8.6% |
| 2005 | 1,274,657 | 200,169 | 13.6% | 359,774 | 35,337 | 8.9% |
| 2006 | 1,380,443 | 213,380 | 13.4% | 412,937 | 80,678 | 16.3% |
| 2007 | 1,614,591 | 229,652 | 12.5% | 435,243 | 97,266 | 18.3% |
| 2008 | 1,673,060 | 287,827 | 14.7% | 454,797 | 113,046 | 19.9% |
| 2009 | 1,645,407 | 310,621 | 15.9% | 451,678 | 150,269 | 25.0% |
| 2010 | 1,777,184 | 299,997 | 14.4% | 491,598 | 148,100 | 23.2% |
| 2011 | 1,923,812 | 296,021 | 13.3% | 523,001 | 173,320 | 24.9% |
| 2012 | 2,030,149 | 333,809 | 14.1% | 539,381 | 154,288 | 22.2% |
| 2013 | 2,019,065 | 338,350 | 14.4% | 537,789 | 160,740 | 23.0% |
| 2014 | 2,055,198 | 343,383 | 14.3% | 617,250 | 130,029 | 17.4% |
| 2015추정 | 2,157,346 | 356,656 | 14.2% | – | – | – |
| 2016추정 | 2,231,383 | 353,325 | 13.7% | – | – | – |

주: 1. 국세의 경우, 1981~1991년 국세감면액은 김명숙(1994) · 임주영(1997)을, 1998~20016년 국세감면액은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를 각각 참고하여 작성

2.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통계연감(舊 지방세정연감)을 참고하여 작성

자료: 조세지출예산서(舊 조세지출보고서), 김명숙(1994), 임주영(1997),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정연감),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Ⅳ. 부록: 일몰연도별 조세 지출 현황

1. 2016년 일몰도래 항목 ····· 83
2. 2017년 일몰도래 항목 ····· 84
3. 2018년 일몰도래 항목 ····· 86
4. 2019년 일몰도래 항목 ····· 89
5. 일몰조항 없는 항목 ····· 90

# Ⅳ. 부록: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 1. 2016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 1999 | 15,708 | 18,163 | 19,321 |
|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1994 | 13,888 | 13,484 | 13,013 |
| 3.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1993 | 6,547 | 5,780 | 5,248 |
|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1 | 2,104 | 1,199 | 1,236 |
|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2003 | 1,628 | 1,423 | 1,215 |
| 6.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1983 | 947 | 1,074 | 1,065 |
| 7.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8 | 607 | 684 | 905 |
| 8.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1970 | 185 | 144 | 149 |
| 9.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8 | 184 | 136 | 140 |
| 10.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 2008 | 92 | 104 | 108 |
| 11.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2001 | 30 | 32 | 34 |
| 12.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07 | 28 | 27 | 26 |
|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08 | 26 | 27 | 28 |
| 1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2012 | 21 | 34 | 35 |
|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2011 | 18 | 39 | 40 |
| 16.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2009 | 1 | 1 | 1 |
| 17.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014 | 0.31 | 4 | 14 |
| 18.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08 | 0.18 | – | – |
| 19. 지방시·군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2011 | 0.2 | 1 | 1 |
| 20.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2014 | – | 7 | 7 |
|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2012 | – | – | – |
|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12 | – | – | – |
| 2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과세특례 | 2014 | – | – | – |
| 24.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 2014 | 신설 | – | – |
| 25.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수입액 증가 세액공제 | 2014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2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08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
| 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2015 |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 | |
| ※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경과조치 [2] | | 조세지출예산서 미대상 | | |
| **2016년 일몰도래 27개 항목 감면액 합계** | | 42,015 | 42,356 | 42,579 |

주: 1)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2016년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4조원)
2)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국세)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6년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목록에 포함
3)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4)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2017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1.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1989 | 15,717 | 15,307 | 15,777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983 | 13,812 | 16,508 | 16,995 |
| 3.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1982 | 11,349 | 8,938 | 4,415 |
| 4.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990 | 2,288 | 2,481 | 1,508 |
| 5.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 감면 | 2000 | 1,405 | 1,349 | 1,338 |
|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2012 | 1,000 | 897 | 1,142 |
|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997 | 783 | 1,791 | 812 |
| 8.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990 | 641 | 716 | 743 |
| 9.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2002 | 278 | 296 | 72 |
| 1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2007 | 244 | 257 | 256 |
| 11. 천연가스 및 전기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12 | 226 | 204 | 213 |
| 12.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82 | 104 | 118 | 322 |
| 1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1977 | 96 | 103 | 98 |

(단위: 억원)

| 항목명 |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14. |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97 | 61 | 36 | 37 |
| 15.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2009 | 48 | 34 | 35 |
| 16.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987 | 34 | 36 | 37 |
| 17.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1997 | 24 | 27 | 28 |
| 18.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1997 | 22 | 60 | 146 |
| 19.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1999 | 12 | 2 | 2 |
| 20.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012 | 12 | 14 | 14 |
| 2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1996 | 4 | 14 | 14 |
| 22.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977 | 3 | 3 | 2 |
| 23.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10 | 3 | 1 | 1 |
| 24.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04 | 2 | 0.00 | 0.00 |
| 25.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009 | 2 | 1 | 1 |
| 26.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986 | 0.26 | 0.26 | 0.02 |
| 27.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2001 | 0.19 | 0.09 | 0.10 |
| 28.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997 | – | – | – |
| 29.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13 | – | – | – |
| 30. |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13 | – | – | – |
| 31.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14 | 신설 | – | 1,000 |
| 32. |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015 | | 신설 | 1,003 |
| 33. | 청년고용증대세제 | 2015 | | 신설 | 600 |
| 34.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14 | 신설 | – | 270 |
| 35.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2016 | | | 110 (신설) |
| 36.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2014 | 신설 | 1 | 1 |
| 37.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2014 | 신설 | – | – |
| 38.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2014 | 신설 | – | – |
| 39. |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 2014 | 신설 | – | – |
| 40.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2015 | | 신설 | – |
| 41.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 2015 | | 신설 | – |
| 42.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6 | | | 신설 |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016 | | | 신설 |
| 4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1998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45.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01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46.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2005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47.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09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48.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11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49.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14 | 신설 | – | 추정곤란 |
| **2017년 일몰도래 49개 항목 감면액 합계** | | **48,170** | **49,195** | **46,998** |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2018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 | 1994 | 27,860 | 28,188 | 28,499 |
| 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 1972 | 14,523 | 13,881 | 13,472 |
|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 (8년이상 직접지불보조금 농지 농업법인 양도시 3년) | 1987 | 13,584 | 9,712 | 8,043 |
|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1976 | 8,943 | 8,681 | 5,181 |
| 5.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1980 | 2,616 | 3,371 | 2,829 |
|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94 | 2,012 | 1,548 | 1,654 |
|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2005 | 1,657 | 1,871 | 1,766 |
| 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994 | 1,477 | 1,688 | 1,672 |
| 9.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979 | 1,463 | 808 | 319 |
|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12 | 1,030 | 1,135 | 1,367 |
| 1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 2008 | 576 | 561 | 584 |
| 1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2001 | 554 | 427 | 443 |
| 1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10 | 372 | 430 | 446 |
| 14.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1991 | 316 | 381 | 393 |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15.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008 | 310 | 111 | 116 |
| 16.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009 | 303 | 333 | 346 |
| 1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1990 | 258 | 336 | 354 |
| 18.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99 | 226 | 204 | 213 |
| 19.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1982 | 211 | 222 | 149 |
| 20.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94 | 197 | 252 | 331 |
| 21.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과세특례 | 1999 | 174 | 172 | 165 |
| 22.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02 | 141 | 59 | 62 |
| 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02 | 97 | 46 | 48 |
| 2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1990 | 79 | 144 | 150 |
| 2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07 | 70 | 42 | 25 |
| 2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1970 | 65 | 54 | 56 |
| 27.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08 | 56 | 146 | 164 |
| 2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05 | 53 | 52 | 53 |
| 2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987 | 27 | 27 | 28 |
| 30.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08 | 24 | 40 | 27 |
| 31.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등 | 1998 | 24 | 23 | 24 |
| 3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1977 | 21 | 20 | 20 |
| 3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2007 | 15 | 15 | 18 |
| 34.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 2006 | 14.28 | 0.71 | 0.73 |
| 35.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1997 | 12 | 9 | 9 |
| 36. 기술이전 및 취득액에 대한 과세특례 | 1994 | 9 | 13 | 8 |
| 37.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2010 | 8 | 11 | 13 |
| 38.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2012 | 2 | 3 | 3 |
| 3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008 | 2 | 1.45 | 1.4 |
|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982 | 2 | 1 | 1 |
| 4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1966 | 1 | 0.23 | 0.24 |
| 4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 2014 | 1 | 0.17 | 0.17 |
| 4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09 | 0.36 | 2.03 | 2.03 |
| 44.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011 | 0.1 | 0.12 | 0.13 |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4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 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010 | 0.07 | 0.03 | 0.04 |
| 46.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2002 | 0.04 | 0.01 | – |
| 47.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998 | – | – | – |
| 4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 1998 | – | – | – |
| 49.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01 | – | – | – |
|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2002 | – | – | – |
| 5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약업 등) | 2006 | – | – | – |
| 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09 | – | – | – |
| 53.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 2009 | – | – | – |
| 54.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10 | – | – | – |
| 55.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2010 | – | – | – |
| 56.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2013 | – | – | – |
| 57.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2014 | 신설 | 23 | 24 |
| 5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2015 | | 신설 | 31 |
| 5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 2014 | 신설 | – | – |
| 60.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4 | 신설 | – | – |
| 61.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 | 2014 | 신설 | – | – |
| 6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14 | 신설 | – | – |
| 6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2014 | 신설 | – | – |
| 6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 2015 | | 신설 | – |
| 6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 2015 | | 신설 | – |
| 66.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2015 | | 신설 | – |
| 6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2016 | | | 신설 |
| 6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2016 | | | 신설 |
| 6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2016 | | | 신설 |
| 70.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2016 | | | 신설 |
| 71.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2016 | | | 신설 |
| 7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2016 | | | 신설 |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73.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83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90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5.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2009 |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 | |
| **2018년 일몰도래 75개 항목 감면액 합계** | | **79,386** | **75,045** | **69,111** |

주: 1)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2016년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4조원)가, 2018년의 경우 R&D 비용 세액공제(2.8조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1.4조원) 각각 포함.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2)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3)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2019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2000 | 4,434 | 4,100 | 4,221 |
| **2019년 일몰도래 1개 항목 감면액 합계** | | **4,434** | **4,100** | **4,221** |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5. 일몰조항 없는 항목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1.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1977 | 24,139 | 23,912 | 24,120 |
| 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1977 | 20,550 | 21,574 | 21,584 |
|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2001 | 14,913 | 16,553 | 17,191 |
| 4.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1978 | 10,803 | 10,426 | 11,089 |
| 5.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 1982 | 9,865 | 7,817 | 8,162 |
| 6. 연금계좌세액공제 | 2001 | 9,184 | 8,640 | 9,182 |
| 7.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 1995 | 8,459 | 8,096 | 7,748 |
| 8. 근로장려금(EITC) | 2007 | 7,765 | 11,918 | 13,018 |
| 9.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1978 | 7,113 | 8,250 | 8,775 |
| 10.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 1994 | 6,944 | 6,988 | 7,237 |
| 11. 방위산업물자 공급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1978 | 6,297 | 6,178 | 5,078 |
| 12. 자녀세액공제(구 다자녀/출생입양자/자녀양육비 소득공제) | 2015 | 5,868 | 11,670 | 12,399 |
| 13.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1989 | 3,497 | 3,857 | 4,078 |
| 14.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977 | 2,578 | 2,571 | 2,679 |
| 15. 장애인 추가공제 | 1975 | 2,557 | 2,821 | 3,026 |
| 1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999 | 2,365 | 1,524 | 1,578 |
| 17. 무주택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1995 | 2,320 | 2,767 | 3,143 |
| 18.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 2000 | 1,728 | 1,869 | 1,942 |
| 19.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2002 | 1,616 | 1,497 | 1,607 |
| 20.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 1968 | 1,549 | 1,706 | 1,801 |
| 21. 부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1991 | 1,081 | 651 | 866 |
| 22.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2001 | 908 | 677 | 703 |
| 2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 2002 | 858 | 1,252 | 1,010 |
| 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004 | 848 | 953 | 955 |
| 2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2007 | 832 | 1,138 | 1,205 |
| 26.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1992 | 702 | 457 | 477 |
| 27.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 1991 | 681 | 624 | 643 |
| 28.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004 | 676 | 581 | 455 |
| 2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2006 | 584 | 315 | 326 |
| 30.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11 | 496 | 1,015 | 1,061 |
| 3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 2001 | 496 | 547 | 581 |
| 32. 교육·과학, 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77 | 478 | 498 | 520 |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3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 1999 | 453 | 171 | 178 |
| 34. 대학교원,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활동비 비과세 | 1971 | 449 | 499 | 532 |
| 3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008 | 447 | 199 | 213 |
| 36. 기장세액공제 | 1999 | 400 | 540 | 457 |
| 37.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 1975 | 354 | 508 | 467 |
| 38.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인한 급여 비과세 | 1990 | 350 | 440 | 469 |
| 39.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981 | 282 | 248 | 264 |
| 40.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 1968 | 256 | 270 | 282 |
| 4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2001 | 213 | 183 | 189 |
| 42.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 2001 | 213 | 177 | 131 |
| 43.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990 | 206 | 208 | 221 |
| 44. 가업상속공제 | 1997 | 194 | 97 | 183 |
| 45.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191 | 224 | 336 |
| 46.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1999 | 176 | 66 | 67 |
| 4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1970 | 158 | 163 | 169 |
| 48. 동거주택 상속공제 | 2009 | 157 | 148 | 152 |
| 49. 영농상속공제 | 1997 | 89 | 40 | 43 |
| 50. 한부모 소득공제 | 2013 | 63 | 77 | 82 |
| 51. 골프선수의 골프장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2000 | 37 | 34 | 34 |
| 5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006 | 36 | 28 | 34 |
| 53.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 | 2011 | 14 | 12 | 12 |
| 54. 소액담배·특수제조용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99 | 7 | 3 | 3 |
| 55.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 2013 | 7 | 9 | 10 |
| 56.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1997 | 4 | 1 | 1 |
| 57.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1999 | 2 | 0 | 2 |
| 5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14 | 1 | – | – |
| 5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010 | – | – | – |
| 60.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2007 | – | – | – |
| 61. 방송 및 교육용등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979 | – | – | – |
| 62.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1973 | – | – | – |
| 6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2010 | – | – | – |
| 64.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에 대한 주세 등 면제 | 1966 | – | – | – |

(단위: 억원)

| 항목명 | 시행 연도 | '14 실적 | '15 추정 | '16 추정 |
|---|---|---|---|---|
| 65.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2008 | – | – | – |
| 66.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 2010 | – | – | – |
| 67.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2009 | – | – | – |
| 6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14 | – | – | – |
| 69. 자녀장려세제(CTC) | 2015 | 신설 | 8,023 | 8,023 |
| 70. 월세 세액공제 | 2015 | 신설 | – | – |
| 71. 기부장려금 | 2016 | 신설 | – | – |
| 7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 1977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3.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2011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4.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1980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5.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00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6.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2009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7.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14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78.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982 |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 | |
| **일몰조항 없는 78개 항목 감면액 합계** | | 163,509 | 181,710 | 186,793 |

주: 1)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2)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3)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_____,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4.10

_____,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VI 조세지출」, 2015.7

_____,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2015.10

기획재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3.3.26

_____,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5.3

_____,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6.3.29

김명숙,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한국조세연구원, 1994.4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재정포럼 제13권 제8호 통권 제146호, 2008.8. pp.6-18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임주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편 제3권: 지방세 · 재산과세 · 조세지원제도」, 2012.12

Shannon, Harry A., "The Tax Expenditure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 Comparison", 33 Tax Notes 201, 1986

BMF(GER), Summary: 24th Subsid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2013

HRMC(UK), 「Tax and NICs receipts: information and analysis」, 2016.5

OMB(USA),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7」, 2016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_____,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s 7」, 65, 1996

# 2016 조세의 이해 및 쟁점

## ⑦ 조세지출


발간일 2016년 6월 3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tel 02 · 2269 · 9917)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8)

ISBN 978-89-6073-902-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대한민국 국회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❼ 조세지출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9-001447-10